
개인연금저축
제일 보람연금보험

'99. 2. 1

(2015 ~ 2018)

제일보람연금보험(개인형) 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새생활설계자금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8. 기타 제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 제4호에 정한 노후생활연금에 대한 수익자를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에 정한 노후생활연금 이외의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8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내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9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 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제2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2.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3. 제1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및 유족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만세연금을 지급합니다.

7.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이하 “장애”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제8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또는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장애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애급여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⑨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족생활연금 또는 새생활설계자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⑩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노후생활연금 지급개시일부터 10차년도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c)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 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중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5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송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모잠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드리며, 이 경우 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1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외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1조 【해지계약의 부활】

- ① 제20조(보험료의 납입 인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기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3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유족생활보험금, 유적생활연금, 새생활설계자금, 사망급여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가입자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노후생활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제2회 이후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 노후생활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연금, 새생활설계자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6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7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3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55세 연금 지급 개시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60세 연금 지급 개시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1,000만원)

지급 사유	급여명	지급액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유족생활보험금	1,000만원 지급
	유족생활연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씩 10년간 지급
	새생활실계자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 10년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피보험자가 제1 보험기간 중 제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유 족 생 활 보 험 금	1,000만원 지급
	유 족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100 만원씩 10년간 지급
	새 생 활 설 계 자 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일로부터 만 10년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0 만원 지급
피보험자가 제1 보험기간 중 암 또는 제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유 족 생 활 보 험 금	1,000만원 지급
	유 족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100 만원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에 암 또는 제해 이외의 원인에 로 사망하였거나 장 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 니함)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제2보화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지급
	2 ~ 20 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만원씩 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 차 년 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250만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충지급)	

- 장수축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연 령	지 급 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중신지급 (단, 피보험자가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100만원 지급

- 장애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8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애등급	지급액
	제2급	700만원 지급
	제3급	500만원 지급
	제4급	300만원 지급
	제5급	150만원 지급
	제6급	100만원 지급

주) 노후생활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남 자)

경 과 기 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867	0	576	0
1년	10,404	4,925	6,912	1,462
3년	31,212	25,627	20,736	14,397
5년	52,020	50,165	34,560	29,877
10년	104,040	124,701	69,120	74,277
15년	156,060	연금개시	103,680	135,249

(여 자)

경 과 기 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941	0	604	0
1년	11,292	6,130	7,248	2,118
3년	33,876	29,626	21,744	16,645
5년	56,460	57,543	36,240	34,154
10년	112,920	143,272	72,480	85,837
15년	169,380	연금개시	108,720	158,337

제일보람연금보험(부부형) 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 후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보험기간 동안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개인형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3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에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제1보험기간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포함)하였거나 주피보험자가 사망(제1보험기간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포함)한 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적된 때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연금보험료 소득 공제”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에 정한 노후생활연금에 대한 수익자를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에 정한 노후생활연금 이외의 보험금에 대

한 수익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언급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계약자는 주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9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양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3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2.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3.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 보험금 및 유족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배우자 생활보험금 및 배우자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배우자생활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6.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기간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포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는 배우자 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7.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8.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8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만세연금을 지급합니다.
 9.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0.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이하 “장애”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장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제8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또는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장애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⑧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

의 장애상태가 된 후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10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또 다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⑩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족생활연금, 새생활설계자금 또는 배우자생활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제1항 제5호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노후생활연금 지급 개시일부터 10차년도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c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 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

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또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동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 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17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2조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21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4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생활설계자금, 배우자생활보험금, 배우자생활연금, 사망급여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노후생활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⑥ 노후생활연금,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연금, 제2회 이후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 생활설계자금, 제2회 이후 지급되는 배우자생활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7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8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3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입·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4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55세 연금 지급 개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종신까지
60세 연금 지급 개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종신까지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 사유	급여명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유족 생활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유족 생활 연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씩 10년간 지급
	새생활 설계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10년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지급 사유	급여명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	유족생활보험금	1,000만원 지급
	유족생활연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씩 10년간 지급
	재생활자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 10년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	유족생활보험금	1,000만원 지급
	유족생활연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액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	배우자 생활 보험금	500만원 지급
	배우자 생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원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지 급 사 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200만원 지급
	2 ~ 20 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만원씩 증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 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충지급)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2보험기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만20년 경과 이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만20년 경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씩 지급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연금부터 지급함)	

- 장수축하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지급 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 연령	지급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8호)

지급 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종신지급 (단,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100만원 지급

- 장애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제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애등급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제2급	700만원	350만원
	제3급	500만원	250만원
	제4급	300만원	150만원
	제5급	150만원	75만원
	제6급	100만원	50만원

주) 노후생활연금 또는 배우자노후생활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남 자)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1개월	1,206	0	805	0
1년	14,472	7,163	9,660	2,470
3년	43,416	36,061	28,980	20,871
5년	72,360	70,196	48,300	42,810
10년	144,720	173,466	96,600	105,908
15년	217,080	연금지급	144,900	191,781

(여 자)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1개월	1,289	0	865	0
1년	15,468	8,085	10,380	3,178
3년	46,404	38,944	31,140	23,083
5년	77,340	75,186	51,900	46,627
10년	154,680	184,845	103,800	114,630
15년	232,020	연금지급	155,700	207,188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별표3)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의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파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치형 (Y35.5)

(별표4) **장애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종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가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발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5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본일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활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애”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애, 안구운동 장애, 조절 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브,프), 치설음(치,디,리),구개음(크,츠),후두음(오,호)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애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sum \frac{\text{운동종류별 장애후 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관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관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관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관관절 또는 중수지절관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관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질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애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애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위	운동의 종류	A M A 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
경부	전후굴	30 30	60	-
	좌우회전	40 40	80	-
	좌회전	30	60	-
	우회전	30	60	-
흉부	전후굴	90 30	120	-
	좌우회전	20 20	40	-
	좌회전	30	60	-
	우회전	30	60	-
어깨관절	신전(후방거상)	40	190	50%
	신전(전방거상)	150		
	내회전	40	130	20%
	외회전	90		
팔꿈치관절	외전(후방거상)	150	150	30%
	신전	0 150	150	60%
팔목관절	회내	80	160	40%
	회외	80		
손목관절	신전	60 70	130	70%
	회내	35 45	80	30%
대퇴관절	신전	30 100	130	33%
	내회전	20 40	60	33%
	회내	40 50	90	33%
무릎관절	신전	0 150	150	100%
발목관절	신전	20 40	60	70%
	내반	35 25	60	30%

- 주요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일보람연금보험
건강생활보장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건강생활보장특약(개인형)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 확정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다음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서 정한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생활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제외합니다)에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이하 계속 입원하여 181일이 되는 날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라 합니다.)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 있

- 을 때에는 노후간호연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진하여 입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며, 181일 이상 입원으로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181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는 노후간호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약관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 2.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 3.보험증권
- 4.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5.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6.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암 진단서, 상피내암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생활보험금, 노후간호연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0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1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55 세형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후부터 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60 세형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후부터 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생활보험금(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지급액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300만원 지급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20만원 지급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노후간호연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매6개월 마다 100만원씩 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지급 (단, 노후간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노후간호연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남 자)

경과 기간	55세형		60세형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1개월	49	0	35	0
1년	588	0	420	0
3년	1,764	1,120	1,260	607
5년	2,940	2,563	2,100	1,641
10년	5,880	6,539	4,200	4,234
15년	8,820	11,943	6,300	7,523

(여 자)

경과 기간	55세형		60세형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1개월	63	0	43	0
1년	756	95	516	0
3년	2,268	1,592	1,548	864
5년	3,780	3,425	2,580	2,113
10년	7,560	8,713	5,160	5,490
15년	11,340	16,131	7,740	10,095

건강생활보장특약(부부형)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피보험자 및 계약체결시 종피보험자의 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 확정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며 계약체결 후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 확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서 정한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생활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 별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2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에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이하 계속 입원하여 181일이 되는 날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라 합니다.)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노후간호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며, 181일 이상 입원으로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181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는 노후간호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4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약관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 2.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 3.보험증권
- 4.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5.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6.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생활보험금, 노후간호연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

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55 세형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 후 부터 주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60 세형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1보험기간 종료 후 부터 주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생활보험금(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300만원 지급 (단,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120만원 지급 (단,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노후간호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2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매6개월 마다 60만원씩 주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지급 (단,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노후간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노후간호연금을 사망일 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남 자)

경과 기간	55세형		60세형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1개월	70	0	52	0
1년	840	0	624	0
3년	2,520	1,425	1,872	771
5년	4,200	3,375	3,120	2,195
10년	8,400	8,564	6,240	5,644
15년	12,600	15,458	9,360	9,887

(여 자)

경과 기간	55세형		60세형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1개월	80	0	61	0
1년	960	0	732	0
3년	2,880	1,690	2,196	976
5년	4,800	3,842	3,660	2,552
10년	9,600	9,651	7,320	6,436
15년	14,400	17,445	10,980	11,237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II. 신생물	C00 - 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VI.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VIII.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IX. 순환기계의 질환	I00 - I99
X. 호흡기계의 질환	J00 - J 99
X I. 소화기계의 질환	K00 - K93
X 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XIV.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 - N99
XV.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X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X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 - R99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V01 - Y98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 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 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 02
4. 상피내의 흑색종	D 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 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 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 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 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 09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일보람연금 종액특약 약관

제일보람연금 증액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계약자의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주계약의 제2보험기간(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개시일로 합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형에 있어서는 주계약 개인형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부부형에 있어서는 주계약 부부형의 주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중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중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 【특약의 내용】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배당금으로 주계약의 노후생활연금(부부형의 경우에는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포함)과 동일한 내용의 연금(이하 “증액노후생활연금”이라 합니다)을 증액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배당금을 증액노후생활연금으로 전환하

는 시기는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개인형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부부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제1보험기간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포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증액노후생활연금(별표 “증액노후생활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증액노후생활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피보험자의 호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증액노후생활연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증액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증액노후생활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④ 중역노후생활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증액노후생활연금 지급기준표**

【개인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증액노후생활연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차년도 (개시) 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지급
	2 ~ 20차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250만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부부형】

- 중액노후생활연금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차년도 (개시) 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200만원 지급
	2 ~ 20차 연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 증액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지급 사유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2보험기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만20년 경과 이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에 매년 2만 5천원씩 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만20년 경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씩 지급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연금부터 지급함)	

주) 증액노후생활연금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입원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부부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 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제2조(피보험자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

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2호,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특약내용의 변경) 제2항,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 보험기간 : 20년 만기
 { 가입연령 : 40세
 { 납입방법 : 전기월납
 { 3일초과 입원시 보장의 경우

(본인형)

구 분	남 자		여 자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 년	372	96	372	98
3 년	1,116	272	1,116	277
5 년	1,860	422	1,860	430
7 년	2,604	544	2,604	553
10 년	3,720	662	3,720	672
15 년	5,580	588	5,580	592
20 년	7,440	0	7,440	0

(부부형)

구 분	남 자		여 자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 년	564	148	612	152
3 년	1,692	433	1,836	429
5 년	2,820	683	3,060	665
7 년	3,948	886	4,284	857
10 년	5,640	1,086	6,120	1,034
15 년	8,460	988	9,180	916
20 년	11,280	0	12,240	0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 급 액
3일을 초과 하는 입원 일수 1일당	● 본인형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부부형 주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중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1000 해당액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2. 신생물	C00 - D48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5.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8. 순환기계의 질환	I00 - I99
9. 호흡기계의 질환	J00 - J 99
10. 소화기계의 질환	K00 - K93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 - N99
14.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 - R99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 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V01 - Y98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울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3) 재 해 분 류 표

제일 나이스건강보험 약관“(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계 장 해
제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 비, 교),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ㄱ, ㅋ),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애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애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애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위	운동의 종류	A M A 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
경부	전굴	30	60	-
	후굴	30		
	좌굴 우굴	40 40	80	-
흉요부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
	전굴	90	120	-
	후굴	30		
어깨관절	좌굴 우굴	20 20	40	-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40 150	190	50%
팔꿈치관절	내회전 외회전	40 90	130	20%
	외전(측방거상)	150	150	30%
	신전 굴곡	0 150	150	60%
팔목관절	회내 회외	80 80	160	40%
	신전 굴곡	60 70	130	70%
대퇴관절	외굴 내굴	35 45	80	30%
	신전 굴곡	30 100	130	33%
	내전 외전	20 40	60	33%
무릎관절	회내 회외	40 50	90	33%
	신전 굴곡	0 150	150	100%
발목관절	신전 굴곡	20 40	60	70%
	내반 외반	35 25	60	30%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동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단체취급특약

1.

2.

가

5 【

】

신체부위의 설명도

